
2025-2027 KOICA-NGO봉사단

[분야 : 기후환경]

모집 안내문

2025. 10. 27.



1 모집 개요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사)환경교육센터, (사)글로벌이너피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사업으로 KOICA-NGO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봉사단프로그램은 방글라데시, 부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할 미래환경의 주인공이자 희망이 될 미래의 환경리더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모집인원 : 30명 (파견 기관별 2~4명이내 팀제운영)
- ☐ 파 견 국 : 3개국 (방글라데시, 부탄, 우즈베키스탄)
- ☐ 활동기간 : 2026년 2월~ 2027년 2월 (12개월)
(1개월 국내 원격활동 + 11개월 해외 파견)
- ☐ 모집일정 : 2025.10.27.(월)-2026.1.16.(금)
- ☐ 파견시기 : 2026년 2월 중 원격활동 실시, 3월 중 순차적으로 현지파견 예정
- ☐ 모집분야 : 환경, 임농업, 행정(일반, 지역개발) 교육, 보건, 통역, 홍보 등
 - * 상기 직종, 전공에 상관없이 기후환경 활동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봉사활동 분야의 재능과 전문성이 있다면 지원 가능

☐ 활동내용

구분	내용
공통직무	○ SDGs 13(기후환경) 달성을 위한 기획 활동 - 개인 혹은 팀별 활동으로 기후환경 관련 교육 실시 - 국내외 활동 홍보 및 SNS 운영 및 관리 - 기후환경 관련 교육 자료제작 및 번역 - 기후환경 관련 현장사업 기획 및 운영
현장실무	○ 파견 NGO관련 활동 지원 - 파견NGO별 고유업무는 상이함.

- ☐ 지원내용 : 입출국 경비(항공료 등), 해외 여행자 보험, 생활비, 주거비, 현지정착비, 출/귀국준비금, 귀국 건강검진,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공통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

2 지원자격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제3조(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1.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2025. 11. 19.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2006. 11. 19. 이전 출생자)
 - 협력국 요청에 따라 일부 수요/국가별 연령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기저질환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봉사단 선발 과정에서 신체검사 통과 필수)
 - ※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
3. 파견국이 요청하는 자격 기준(자격, 경력 등)에 해당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 남자는 군 복무 관련 국외여행에 제한이 없는 자
 -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에 따라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에 따라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절차에 따른 국외여행이 가능한 자

◎ 우리 정부와 파견국 출입국 관리기준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등에 부합하는 자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관용여권 또는 일반여권으로 파견예정으로, 국내교육 대상자에 한해 관련 사항 상세 안내
3. 파견 국가별 적정 활동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협력국 출입국 또는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연장자 및 12~64세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파견 국가별 출국 요건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수 요구될 수 있음
 - ※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위탁형 봉사단 (NGO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KOICA 일반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KOICA 자문단 등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직종별 우대 사항

- 환경분야: 기후환경 관련 전공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
- 교육분야 : 교육관련 전공 혹은 전공무관. 학생,주민 대상으로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자
- 지역개발/행정분야 : 지역사회 커뮤니티 운영 경험, 리더, 통역, 등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공자. 컴퓨터(엑셀,워드, 파워포인트등)작업가능자
- 홍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동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 홍보 채널 운영 등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공자

○ 아래 사항에 해당 시 가산점 부여

- 직종 관련 자격증
-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 봉사단 활동 경험
- 현지어 가능(6개월 이상 파견국 경력자), 영어 공인점수
- 사회배려층

○ 서류전형 기준

심사 기준		배점
학력점수 배점기준 (30점)	○ 전공/유사학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30
	○ 전공/유사학과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또는 학위소지자	20
	○ 전공/유사학과 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 전공/유사학과 석사 3학기 이상 또는 박사 재학중인 자	
	○ 전공/유사학과 대학교 2학년 이하 재학중인 자	15
	○ 전공/유사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중인 자	
	○ 일반학과 전문학과 이상 학위소지자	
	○ 전공/유사 고등학교 졸업자	10
	○ 일반학과 전문학사 이상 재학 중인 자	5
	○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는 파견 시기에 따라 졸업자로 간주 * 분야별 전공/유사/일반학과 리스크는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지원서류 배점기준 (30점)	○ 자기소개서 작성 충실도 ○ 지원동기 및 직무접합도 ○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지원직무 이해도	30
경력 배점기준 (40점)	○응시직종 해당 경력 10년 이상	40
	○응시직종 해당 경력 7년 이상	35
	○응시직종 해당 경력 5년 이상	30
	○응시직종 해당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5
	○응시직종 해당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20
	○응시직종 해당 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
총점		100
가산점	○ 사회적 배려층(표 참고) 서류5점, 면접5점 가산 ○ 관련/유사업종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3점 가산 ○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 경력자의 경우 5점 가산 ○ 해외봉사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5점 가산 ○ 오다(ODA) 자격증 취득자 5점 가산 (3년 이내) ○ ODA교육원 교육수료증 소지자 2점 추가가산(3년 이내) ○ 공인 영어 점수 취득자 최대 5점 가산 ○ 현지어 가능한 자 5점 가산 (파견 예정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인정)	

○ 가산점 부여 기준

구 분		가산점		비고(증빙자료)
		서류	면접	
사회적 배려층 ※가점 상한 없음	차상위계층	5점	5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등
	장애인	5점	5점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점	5점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다문화가족	5점	5점	국적취득증명서(국적취득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한부모가족	5점	5점	한부모 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5점	5점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구직등록확인서 등
	여성가장	5점	5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없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배우자 없는 경우, 해당자에 한함), 실종신고서(배우자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배우자 있는 경우) 등
	보훈보상대상자	5점	5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5점	5점	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
외국어 ※ 최대 5점 이내 가점인정, 중복가점도 5점 초과 불가 ※ 성적 유효기간: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인정 정기시험 성적 ※ 사유를 불문하고 진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	영어 ※ 인정: TOEIC, New TEPS, TOEFL/IBT, G-TELP(level 2)	3점	-	TOEIC 830~920점 New TEPS 324~393점 TOEFL/IBT 95~107점 G-TELP(레벨 2) 80~92점
		5점	-	TOEIC 921~990점 New TEPS 394~600점 TOEFL/IBT 108~120점 G-TELP(레벨 2) 93~99점
	러시아어 ※ 인정: TORFL, FLEX	3점	-	TORFL 1단계 FLEX 2A, 2B
		5점	-	TORFL 2, 3, 4단계 FLEX 1A, 1B, 1C

3 지원서 접수 및 전형안내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 **2025.11.19.(수) 13: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메일제목: NGO봉사단 지원_성명)
- 제 출 처: kidcngo@kidc.or.kr
-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한글파일로 제출 필수 (pdf불가)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재학생의 경우) 1부
 3. 해당 직종 경력증명서 (경력자)
 4. 해당 직종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
 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3 서식)
 6. 봉사활동 확인서 (해당자)
 7. 병적증명서(남성 지원자)
 8.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 (붙임3 서식)
 9.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해당자) (붙임4 서식)
 10. 기타 지원서에 작성된 가산점 서류 일체
- ※ 희망 국가 및 기관은 희망하는 국가 순서로 총 2지망까지 (2개 국가, 2개 기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국가로 2개 기관 선택 불가)

□ 전형 안내

- 1) 1차 전형 (서류심사)
 - 직종 적합성(전공, 경력, 자격증 등) 및 지원 자격(연령 등) 여부 점검
 - ※ 지원서 학력, 자격, 경력란에 기재 후, 제출한 증빙서류 사항만 인정
- 2) 2차 전형 (면접심사, 적합도검사)
 - (기술면접) 지원 업무에 대한 지식 점검
 - (일반면접)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적응력 등 소양 평가
 - (적합도검사) 온라인 실시
 - ※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온라인인 면접 가능
- 3)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용조회)
 - (신체검사) 1차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2차 검진 추가 진행
 - (신용조회) 신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 ※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 결과와 직종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 국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4 선발일정

일정	일 정
25.10.20(월)	모집사전공고
25.10.27(월)-11.19(수) 13:00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25.11.11.(화) 12:00	(온라인) 모집설명회
25.11.25.(화)	1차전형 합격자 발표
25.11.25.(화)-25.11.28(금)	(온라인) 적합도검사
25.11.29.(토)	(오프라인) 면접전형
25.12.5.(금)	2차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25.12.10.(수)-25.12.17.(수)	신용조회 및 신체검사 (1차) *25.12.26. (금) 결과확인
25.12.26.(금)-26.01.13.(화)	신체검사 재검(대상자에 한함) *26.01.14.(수) 결과확인
26.01.16.(금)	3차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26.01.27.(화)-26.02.03(화)	(오프라인) 국내교육
26.02.04.(수)-26.03.03.(화)	(온라인) 계약 및 국내 원격활동 시작
26.03.04.(수)~	출국(파견) * 국별상황에 따라 순차파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 모집 설명회는 zoom 실시간으로 개최되며, 관련자료 업로드예정입니다.

*** 국내교육은 집합교육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영월)으로 진행되며 필수 참석입니다.**

5 증빙서류 제출

○ 지원서 내용 관련 증빙

증빙서류	증빙자료
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이후 내용부터 기재 - 지원서 내 기재한 모든 학력에 대한 증명서 (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경력증명서	- 지원직종 관련 경력증명서(무급 경력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면허증 및 자격증	지원 직종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 확인서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한함, 확인서 내 활동 시수 기재 필수 - 단, 해외봉사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증빙자료
	200시간 이상으로 인정
병적증명서	○ 남성 지원자에 한함
가산점 증빙	○ 교육이수증은 기관명 및 직인/날인, 시수, 내용 등 표기되어야 인정 ○ 공인 어학증서 등 가산점에 해당되는 서류

○ 사회배려층 및 지역인재 제출증빙

사회배려층 구분	증빙자료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증명서(국적취득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구직등록확인서 등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없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배우자 없는 경우, 해당자에 한함), 실종신고서(배우자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배우자 있는 경우) 등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
자립준비청년 (舊보호종료아동)	재원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위탁가정/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보호종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관 발급서류의 경우, 발급기관명 및 직인/날인, 경력 기간, 발급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가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봉사단원 지원사항

○ 지원사항

구분	지원내용
국내활동비	○ 원격활동비 : 1개월 105만원 (세전)
출국시 지원	○ 출국준비금(1회) 500,000원, 항공료, 예방접종, 비자발급비 등
활동시 지원	○ 생활경비 : 현지생활비, 주거비 ○ 활동경비 : 활동물품 및 현장사업 협력활동비, 현지어 심화학습비 ○ 안전 및 건강관리 :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 지원 서비스 가입 ○ 기타지원 : 격려물품, 안전물품, 의약물품
귀국시 지원	○ 국내 정착지원금 (월 60만원 적립), 귀국준비금 ○ 항공료, 화물택송료 ○ 귀국 검진비
국제개발협력사업 재참여 지원	○ 임기만료 귀국 단원은 KOICA 신입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최종채용 확정시 봉사단 활동 기간 경력 인정

○ 국별 지원상한액 기준

구분	국내 원격활동비 (1회)	출국준비금 (1회)	생활비 (11개월)	주거비 (11개월)	귀국준비금 (1회)	귀국 화물택송료 (1회)	국내 정착지원금 (매월)
방글라데시	1,050,000 원	500,000원	\$570	*도시 : \$600 *지방 : \$230	한달치 생활비	한달치 생활비	600,000 (중도귀국시, 할인을 적용)
부탄			\$550	*도시 : \$315 *지방 : \$285			
우즈베키스탄			\$700	*도시 : \$600 *지방 : \$500			

* 주거비 : 국별 상한액 내에서의 계약금 실비 지원. 공동거주의 가능성도 있음.

* KOICA 규정에 따르며, KOICA 규정 변동 시 상한액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지원 전 반드시 확인]

□ 지원 전

구분	지원내용
지원서 작성시	○ 1지망과 2지망의 국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바랍니다. (예) 1지망 : 방글라데시, 2지망 : 우즈베키스탄 ○ 지원서 작성시 가산점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가능하며, 활동과 관계된 분야만 작성 바랍니다.
파견형태	○ 2025-2027 NGO봉사단은 국내교육 수료 후 1개월 국내원격활동 후, 11개월간 협력국 활동 현장에 파견되는 형태입니다.
단신부임 원칙	○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여야 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변정리	○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공무원 포함)는 소속기관과 협의(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교육부훈령 제98호(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의거,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모집 및 교육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연수휴직' 가능여부를 소속기관(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위탁형 봉사단 (NGO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등)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발전형진행 중 타 유형 봉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봉사단 지원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취소 신청, 면접 사전 포기 요청 등). ※ 단, KOICA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KOICA 자문단 등은 지원 가능
선발일정	○ 전형별 일정은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결과 발표 시

구분	지원내용
국가배정	○ 최종 국가 및 파견 NGO기관 배정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활동 전문성과 협력국의 요청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국내 교육 참여 전 최종 확정됩니다.
국내교육 (온/오프라인)	○ 국내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시점의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교육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해외봉사단 자격을 부여받으며, 파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교육 미 실시자는 파견 포기 처리됨을 유념 바랍니다. ○ 교육 시작일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 변경또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
백신접종	○ 파견전 예방접종(국가별상이)은 필수 접종으로 미 접종시 파견이 불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연장자 및 12~64세 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파견 국가별 출국 요건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수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이후라도, 병력(病歷)을 숨기거나 지원서 허위 기재, 증명서 위조 등이 확인된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활동기간은 기본 1년이며,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

7 문의처

- 홈페이지 : kidc.or.kr
- 대표메일 : kidcngo@kidc.or.kr
- 전 화 : 070-4916-3609, 3607, 3610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휴무), 10시~18시 (점심시간 11:30-12:30 제외)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의 채널톡 아이콘 클릭하여 문의 가능

<참고>

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출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주민자치센터 발급)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출서류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법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1. 구직등록확인서 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출서류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